

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3-4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.

제 출 자 : 김제시장

1. 개정이유

- 21C 지식정보 홍보화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정보홍보와 마인드확산 및 시민계층간의 정보홍보격차를 해소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할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홍보연구원의 정원이 승인되어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홍보연구원(지방별정7급상당) 신설 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별정직(홍보연구원)공무원 정원승인

[행정12200-28(2003.1.10)호]

김제시조례 제 호

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6. · 홍보연구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) (생략) 1.~15.(생략) <u>〈신 설〉</u>		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) (현행과 같음) 1.~15.(현행과 같음) 16. <u>홍보연구원</u>		